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광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238 발의연월일: 2025. 1. 6.

발 의 자 : 임광현 · 정준호 · 임미애

안규백 • 서영석 • 박홍배

정일영 · 정태호 · 이건태

황정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,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고 국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,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대하여 출석자나 발언 내용을 기록 하도록 하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계엄 선포나 변경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출석자 및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,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할 때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무회의의 계엄 선포 심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

제2조제5항 후단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국무회의는 회의 일시·장소, 출석자의 수 및 성명,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한다"를 "하고, 통고할 때에는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) ①	제2조(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) ①
~ 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
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	⑤
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	
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	
<후단 신설>	이 경우 국무회의는 회의 일시
	·장소, 출석자의 수 및 성명 <u>,</u>
	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
	을 작성하여야 한다.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제4조(계엄 선포의 통고) ① 대통	제4조(계엄 선포의 통고) ①
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	
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(通	
告)하여야 <u>한다</u> .	<u>하고, 통고할 때에는</u>
	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
	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
	<u>야 한다</u> 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